

2026년도 「한반도 과학기술협력사업」 신규과제 공모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「한반도 과학기술협력사업」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,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4월 15일

<주무부처>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
<전문기관>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원화

1. 사업개요

- 사업분류 : 세부 국가간협력기반조성 > 내역협력활동 > 내내역한반도 과학기술협력
□ 사업목적
○ 과학기술·ICT분야별 다양한 협력과제 지원을 통한 남북 간 교류·협력 활성화 기반조성 및 한반도 과학기술 협력 정보 축적

□ 지원내용

Table with 5 columns: 공모형태, 지원분야*, 연구기간(연구개시일**), 총 연구비***, 신규과제 수. Row 1: 자유공모, ①ICT, ②에너지, ③식량, ④기반연구, 1년('26.8.1.), 60백만원, 4개 내외

* 지원분야별 연구내용 예시 등 세부사항 : [붙임] 참고
** 연구개시일은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*** 간접비 :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에 의거 5% 적용

2. 신청(수행)자격 및 참여 제한

□ 신청자격

- 연구개발기관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
혁신법 제2조(정의)
3. "연구개발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·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
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라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마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바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사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

- 연구책임자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 및 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

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

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
2.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
3.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
4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·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5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·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6. 연구개발성과 창출·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
7.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

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
2.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, 그 경제적·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
3.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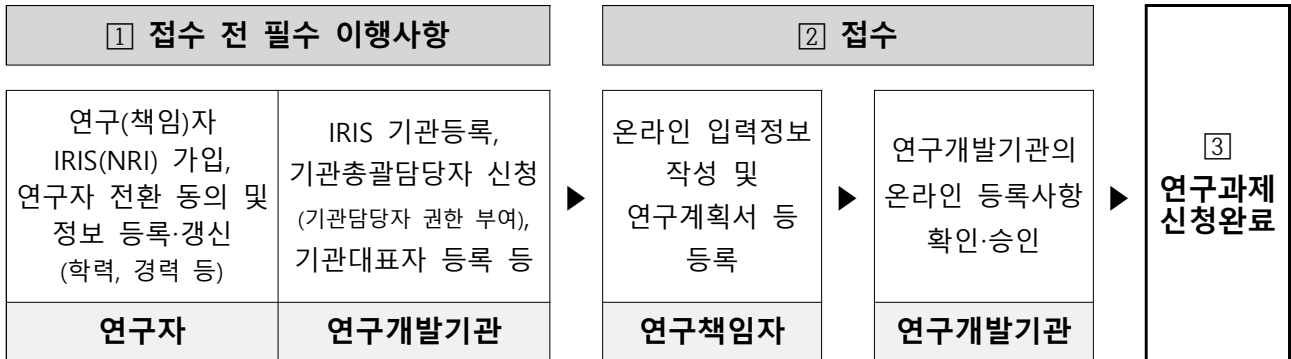
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(이하 "연구책임자"라 한다)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
□ 참여제한

- **(1인 1과제)** 한반도 과학기술협력 내 1인 1과제 수행 제한 기준 적용
- **(정부R&D 공통 제한사항)**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과제신청 및 참여가 가능함. 신청 후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경우, 전문기관 (한국연구재단)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,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
 - ※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 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 확인 요망(<http://www.ntis.go.kr> 로그인 후 확인 가능)
- **(차별성)** 기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의 차별성*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,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
 - * NTIS를 통해 연구목표, 연구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 수행 과제와의 차별성 여부 확인 후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차별성 여부 최종 결정
- **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**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**연구과제 수 상한 제도(3책5공)를 적용하지 않음.**

3. 신청절차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<https://www.iris.go.kr>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 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


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연구개발기관 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

▶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세부내용은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, IRIS 회원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

① (연구자) ①IRIS 회원가입, ②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 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, ③NRI 내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** 정보 등록 필수

*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 / *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
※ ①/② 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, ③ : 연구책임자만 필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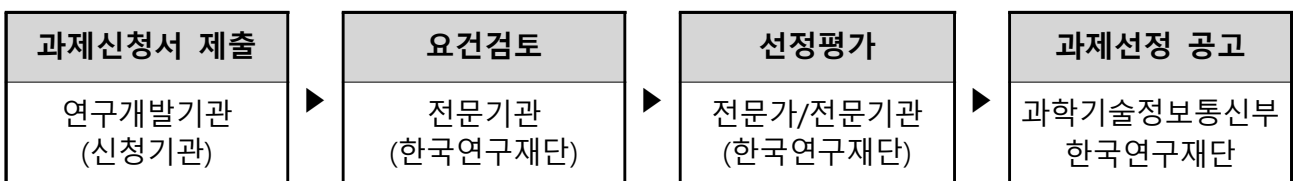
② (연구개발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
▶ IRIS 문의처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4.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

□ 선정절차



※ 접수마감 후 요건검토를 실시하며,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
※ 과제 접수 규모 등에 따라 세부 평가계획에 의해 평가절차 및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.

□ 평가방법

- 평가방법 : 온라인서면 또는 패널 토론평가
- 평가항목(안)

평가항목	세부내용
연구의 필요성	- 한반도 과학기술연구의 필요성 및 구체성 - 수행 연구자 별 역할 분담의 적정성
연구계획의 우수성	- 연구과제의 필요성, 창의성 및 우수성 - 연구목표와 내용의 구체성 및 우수성, 달성가능성 등 - 연구개발 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추진방법의 질적 수준
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	- 해당 분야 연구 성과의 우수성 및 동 사업과의 연계성 - 연구자의 지원분야 전문성 및 북한 관련 자료 보유 및 확보 역량 - 연구자의 및 연구팀의 수행능력
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	- 한반도 과학기술협력 연구 수행으로 기대되는 파급효과 - 예상 연구 성과의 우수성 및 활용 가능성

※ 상기 평가항목은 평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.

5.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

□ 신청기간

사업명	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기간	연구개발기관 승인기간
한반도 과학기술협력	2026.4.20.(월) 09:00:00 ~ 2026.5.21.(목) 17:00:00	2026.4.20.(월) 09:00:00 ~ 2026.5.21.(목) 17:00:00

※ 연구자 접수마감 기간 이전 반드시 “제출완료” 처리가 되어야 하며(“계획서 작성 중”으로 마감 되는 경우 미접수 처리), 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 이후에 접수된 데이터 및 파일은 변경 불가

※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함.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필수여부	비고
1	국문 연구개발계획서	○	웹입력 [양식1]
	연구개발계획서 PART1(표지1)		
	연구개발계획서 PART2(본문1)		
2	신규과제 기타증빙	○	[양식2]
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	
	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등		
3	기타 증빙(필요 시)	X	-

6. 기타사항

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.

※ 「과학기술기본법»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»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»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»,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 등

□ 생성형 인공지능(AI) 사용시 유의사항

※ 「생성형 인공지능(AI)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」[개정판] (‘25.9, 한국연구재단) 참조

○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중간(단계)/결과(최종)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AI 도구를 사용 및 활용할 경우,

① 해당 자료의 적절한 위치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(권장)

표기 항목(예시) : AI 도구 회사/연도/이름(버전, 출시일자/활용일자), [자료 유형]*, URL, 활용방법 등

* 자료 유형: 대형언어모델(LLM), 소프트웨어(SPSS, MATLAB 등 통계나 수치분석 도구 등) 같은 AI 도구의 유형

② 연구자가 직접 출처를 검증하여 AI 활용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연구윤리 위반 가능성을 점검, 필요시 수정·보완

※ AI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표절, 위조, 변조 등 다양한 연구진실성 위반 사례 예방 목적

③ AI 활용 시 연구정보(연구데이터, 과제정보, 수행자 개인정보)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
- 연구개발계획서 등 각종 연구자료를 AI 도구에 업로드하여 연구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, AI 도구를 활용한 연구자에게 책임이 있음.

□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

○ 연구책임자 등은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(또는 학술대회)를 활용

○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(학생연구자 포함)들이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, 해당 학술단체가 관련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

※ 연구(책임)자가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과제 평가결과(선정·단계·최종)에 반영될 수 있음.

□ 사사표기(양식)

▶ 국문표기

이 성과*는 정부(과학기술정보통신부)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(IRIS 과제번호).

▶ 영문표기

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(NRF)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(MSIT**) (IRIS 과제번호).

* 성과는 논문,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

** Ministry of Science and ICT

7. 추진일정(안) ※ 하기 일정은 추진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일정	추진내용	비고
2026.4.15.(수)	· 한반도 과학기술협력사업 신규과제 공고	-
2026.5.21.(목)	· 신규과제 접수 마감	-
2026.6~7월	· 선정평가 및 부처심의	-
2026.8월	· 신규과제 연구개시	-

8. 문의처

구분	담당부서	연락처
한반도 과학기술협력사업	한국연구재단 미주아시아협력팀	(사업관련) 02-3460-5702 (접수관련) 02-3460-5704
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(IRIS)	IRIS 콜센터 IRIS 홈페이지	1877-2041 알림·고객>시스템·서비스문의>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

1 ICT(북한 AI 정책·기술동향 및 공급망 분석)

배경 및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한은 AI·디지털화·정보화를 국가 발전 핵심 수단으로 강조하며 산업 자동화, 행정관리, 재난대응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하고자 함. ○ 중국·러시아 등과의 기술 협력 확대 및 AI 관련 기술 및 공급망이 형성됨에 따라 관련 기술동향과 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 필요
연구내용 (예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한의 ICT·AI 기술 개발 현황 및 정책 동향 분석 ○ 북한 ICT·AI 생태계 및 대외 기술 협력·공급망 구조 분석 ○ 북한 내 ICT·AI 기술 적용 사례 연구

2 에너지(에너지 절감 및 자원 효율화 연구)

배경 및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한 내 전력 부족과 취약한 산업 기반 개선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·도입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 ○ 지역균형개발, 산업 인프라 구축 등 북한의 주요 정책 목표와 관련한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기술동향 및 수요 분석 필요
연구내용 (예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한 전력 및 에너지 시스템 현황 및 정책방향 분석 ○ 신재생에너지·대체에너지원 개발 및 활용 현황 ○ 전력수급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

3 식량(농·수산업 등 식량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동향 및 협력방안 연구)

배경 및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한은 식량 부족 해결을 위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수산·양식 산업 확대 등 식량 생산 기반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 ○ 북한의 생산 시스템과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해 식량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수요 파악 및 향후 인도적 협력 방안 모색 필요
연구내용 (예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한 농·수산업 생산 시스템 및 관련 기술 동향 분석 ○ 식량 확보를 위한 북한 내 농·수산업 기술 수요 조사

4 기반연구(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 수립 지원 연구)

배경 및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9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 수립 필요
연구내용 (예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북정책 변화, 북한 동향, 남북의 과학기술·ICT 수준 비교 등 현황 분석 ○ 과학기술·ICT 분야 남북협력의 새로운 목표 및 추진전략 마련하고, 향후 5년간 과학기술·ICT 분야 중점 추진과제 도출